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205 호
----------	----------

발의년월일 : 2010. 02. 22.

발 의 자 : 송정현의원의외 3인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고성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 체계를 구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목적과 책임을 규정함 (안제1조, 제2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제3조)
- 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개인등 사업을 행 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안제5조)
- 마. 센터를 저소득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 설치토록 규정함 (안제6조)
- 바.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규정함 (안제7조)
- 사. 센터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제8조)
- 아.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해임·위촉,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13조)
- 자.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경과 조치를 둠(부칙 제2항)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2010. 2. 22 ~ 3. 10.
 - 집행부 의견조회 : 2010. 2. 22 ~ 3. 10. 의견 없음
- 나.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4조, 제6조, 「지방자치법」 제9조2항, 제22조
- 다. 예산조치 : 군청과 협의
- 라.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현황 : 별첨

4.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하여 고성군 관내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②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다.

③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정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사업실행 주체)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 법령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대상) 이 사업은 고성군 관내 아동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및 기타 사유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한다.

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2. 지역아동센터 시설과 운영비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제3장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제9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가. 주민생활과장
 - 나.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2. 위촉직 위원

가.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나.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과 시설의 대표

다.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시설의 장

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바. 교육청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아동센터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고성군의 시행계획
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
4. 지역아동센터 구성에 다른 발전방안 모색
5.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해임·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위원 회의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립되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